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장종태 · 박희승
한병도 · 이성윤 · 신영대
최기상 · 백선희 · 허종식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,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.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·조성·관리 및 폐지의 요건·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,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,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,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개인·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·조성·관리하는 사설묘지,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

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신설 등).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소유권 변동 보고 등) ① 제14조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, 제16조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설치·관리하는 사설봉안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사설봉안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, 경매 등의 사유로 변동(이하 이 조에서 “소유권 변동”이라 한다)되는 경우 사설봉안시설등의 설치자·구성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자등”이라 한다)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즉시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제26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연고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등은 설치자등에게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유골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른 유골 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

③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설치자등은 유골 이전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봉안시설의 출입 및 이용

등에 대하여 연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·점검, 안내·공고 등의 범위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15.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·공고, 안내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유권 변동 보고 등에 대한 적용례)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설방안시설등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7조의2(소유권 변동 보고 등)</u> ① 제14조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, 제16조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설치·관리하는 사설봉안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사설봉안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, 경매 등의 사유로 변동(이하 이 조에서 “소유권 변동”이라 한다)되는 경우 사설봉안시설등의 설치자·조성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자등”이라 한다)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즉시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제26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연고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

제4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(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)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장등은 설치자등에게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유골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른 유골 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

③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설치자등은 유골 이전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봉안시설의 출입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·점검, 안내·공고 등의 범위 및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14.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</u> <u>15.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·공고, 안내를 하 지 아니한 자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